

『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』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『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』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3일

대구광역시장

예방접종 관련 적용 예외 미적용 안내 사항

※ 2021년 7월 1일(목) 00시부터 시행하였던 예방접종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은 2021. 7. 15. 00시 ~ 2021. 7. 25.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(단, 경로당의 경우는 제외)

- ① 예방접종 완료자*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•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- ② 예방접종 완료자*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③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.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1) 대 상 :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*

*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* (인원산정) '9명의 범위' 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※ 적용 예외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
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■ 돌잔치(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, 16명까지 가능)

■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

2) 기 간 : 2021. 7. 15.(목) 00:00 ~ 2021. 7. 25.(일) 24:00

3)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

4) 내 용 :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7. 15.(목) 00:00부터

2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) 대 상 :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모임·행사 및 집회·시위

<인원제한 대상 행사(예시)>

- ▲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▲설명회 ▲공청회 ▲학술대회 ▲토론회
- ▲국가기념일 행사 ▲기념식 ▲수련회 ▲사인회 ▲강연 ▲대회 ▲훈련* 등의 모임 및 이벤트
- * 프로스포츠 경기, 세계선수권 대회,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

- ※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 (별도붙임1)’의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
- ※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- ※ 예외)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2) 기 간 : 2021. 7. 15.(목) 00:00 ~ 2021. 7. 25.(일) 24:00

3)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

4) 내 용 :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·행사·집회·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 행사·집회·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

< 100인 미만 행사·집회·시위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, 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100명* 미만으로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<p>※ 출입구 등에 참석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) ▶ 마스크 착용 ▶ 100명*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7. 15.(목) 00:00부터

3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) 대 상 : 대구시내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 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 콜라텍·무도장 ▲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2그룹(5종)	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2종)	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아미용업 ▲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 ▲ 유원시설 ▲ 오락실·멀티방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PC방
기타시설(13종)	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 숙박시설 ▲ 파티룸 ▲ 도서관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전문점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국제회의· 학술행사 ▲ 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※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노래연습장(동전노래연습장 제외) 시설의 경우, 본 고시의 “기본방역수칙(별도붙임)” 을 준수하되,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(2021.7.13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205호)의 내용(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따른다)을 모두 유지함.

2) 기 간 : 2021. 7. 15.(목) 00:00 ~ 2021. 7. 25.(일) 24:00

3)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

4) 내 용 :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“기본방역수칙(별도붙임)” 을 모두 준수하고, 고위험 사업장의 “콜센터, 물류센터” 는 “기본방역수칙(별도붙임)” 및 아래의 방역수칙도 함께 준수

※ 기본방역수칙 중 단계별 수칙은 2단계 기준 준수

※ 유흥시설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,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의 경우는 기본방역수칙 2단계 수칙 중 “24시 이후 운영제한” 을 “23시부터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” 으로 변경 시행

<준수 의무사항>

▲ 콜센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▲ 물류센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7. 15.(목) 00:00부터

4.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) 대 상 : 대구시내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2) 기 간 : 2021. 7. 15.(목) 00:00 ~ 2021. 7. 25.(일) 24:00

3)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

4) 내 용 :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-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7. 15.(목) 00:00부터

5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,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등에 의한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별도붙임 :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종교시설 방역수칙

<위험요인>

- ▲ 설교, 노래(찬송 등)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
- ▲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
- ▲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- ▲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
- ▲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·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
- ▲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(성가대, 청년부, 성경공부 모임 등)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
- ▲ 지역·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(부흥회, 교육, 사목자 모임, 열방센터 등)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
- ▲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,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
- ▲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
- ▲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
- ▲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 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자제 * 모임·행사*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체 수용인원의 30% (두 칸 띄우기) 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단,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체 수용인원의 20% (네 칸 띄우기) 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단,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만 인정 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※ 실외행사 시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	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(2단계부터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음식 섭취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정규예배.미사.법회.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칙 준수하여 참여
	⑧ 환기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교활동 전/후* 반드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	
	⑨ 소독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 1회 이상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추가 수칙	① 비말발생(침 튀기 많이 발생하는 행위) 금지 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
	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 ■ 휴게실, 탕비실,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④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(무료봉사) 운영 시, ※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	
	■ (마스크)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(마스크)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	■ 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 앉기,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) -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- 공용식기(집게 등)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- 식사 시 대화 자제 -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	■ 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 앉기,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) -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- 공용식기(집게 등)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- 식사 시 대화 자제 -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
	■ (손씻기)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	■ (손씻기)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(또는 손소독하기)
■ (비말발생행위) 노래, 춤,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	■ (비말발생행위) 노래, 춤,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	
■ (공용물품) 아동 장난감·책자·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·후 소독 관리 철저	■ (공용물품) 공용물품 사용 자제	